

▼ 지원내용

최고 250만 포인트

1월 150만 공통P + 5월,7월 100만기여P(영업이익연동)

신입사원 일할 계산(입사 익월 10일 이내 총전)

영업이익 연동	5천억이하 : 65만p
	5천억~1조 : 80만p
	1조이상 : 100만p

복지포인트

미래육성포인트

연금저축

자기계발비

본인학자금대출

자녀교육보조비

의료비

단체·실손보험

태아어린이보험

상조 및 용품/화환지원

상호부조

경조금지원

통신비지원

사택/생활관

주택자금

금융기관이자지원

건강검진

직장어린이집

수련관·콘도 휴양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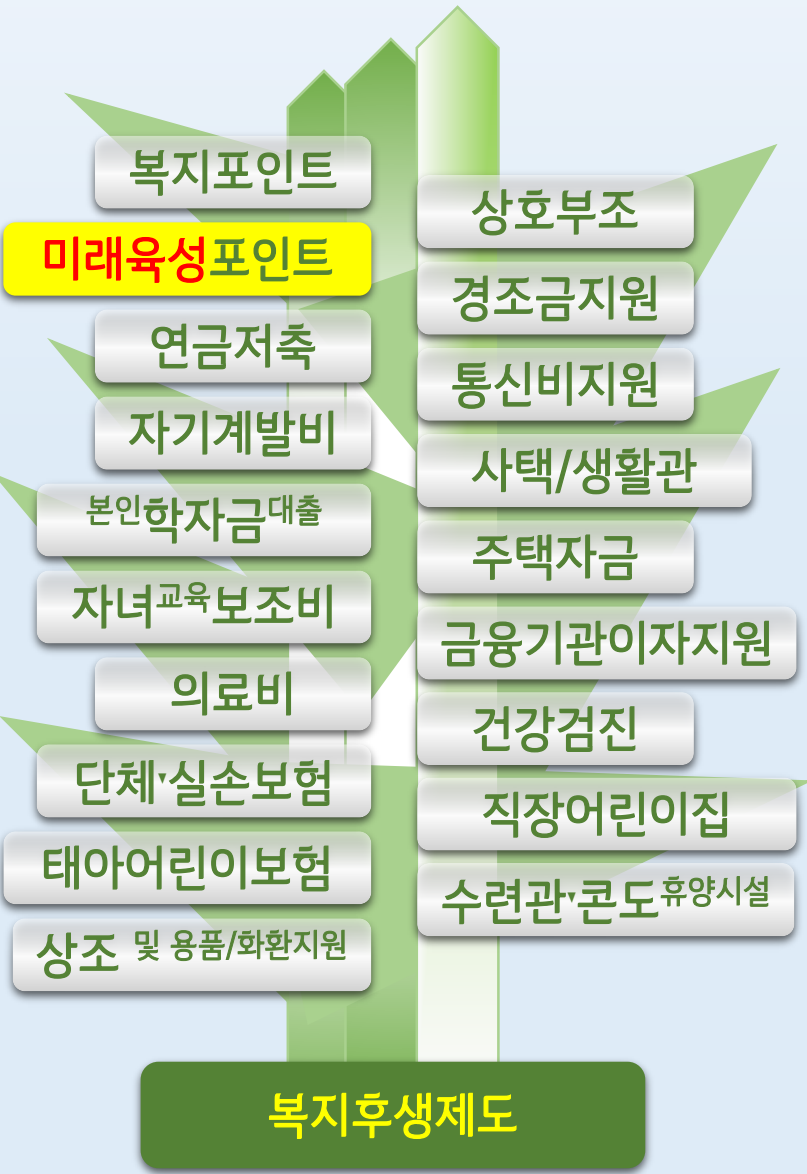
복지후생제도

▶ 지원내용

입사 10년 AND 만 40세미만

50만 포인트

신입사원 일할 계산 자동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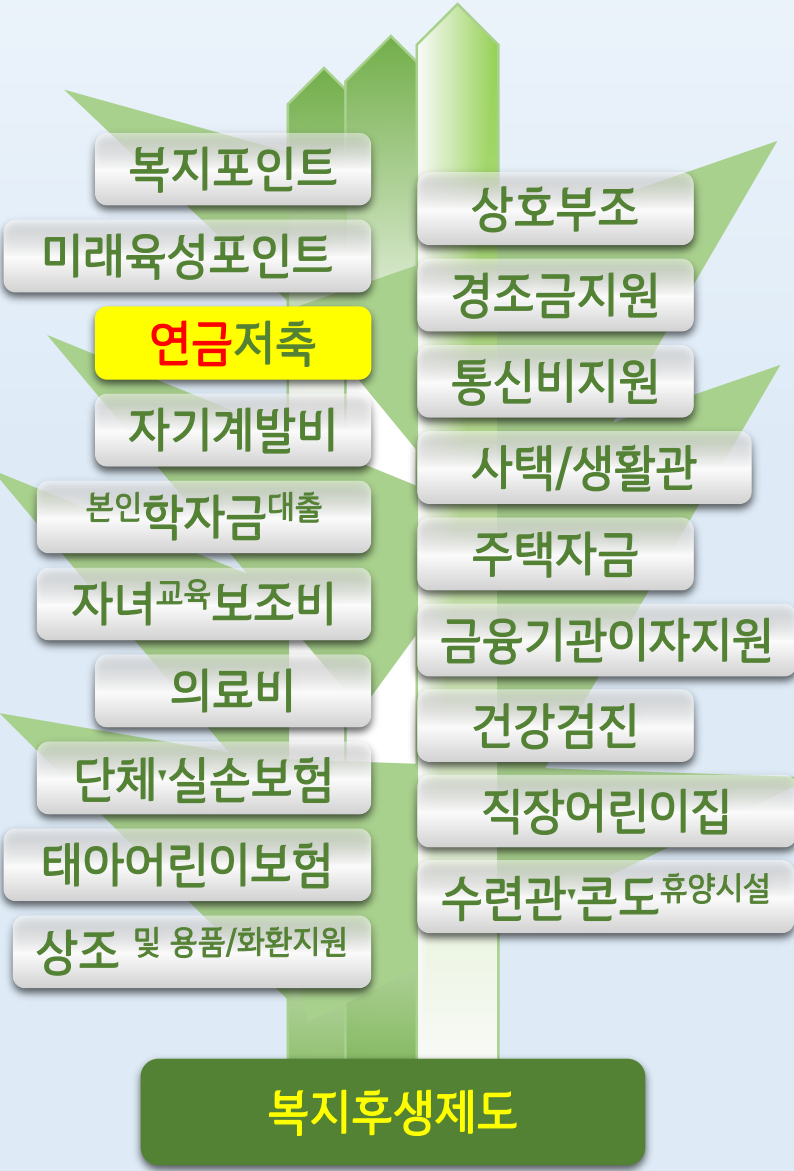


◆ 지원내용

입사 후 월 5만원, 회사지원

재직직원 **限** 2026년 12월말 까지

상품 및 증권사 **변경: 4월, 10월 限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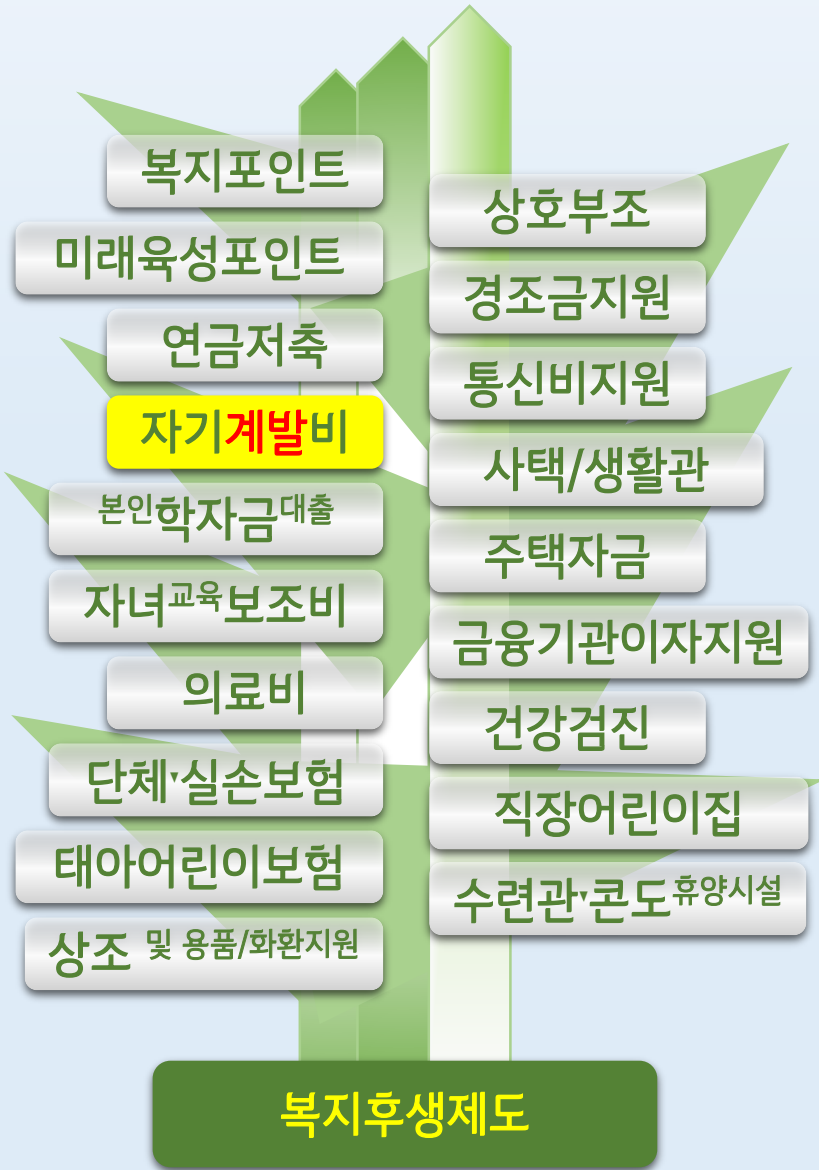
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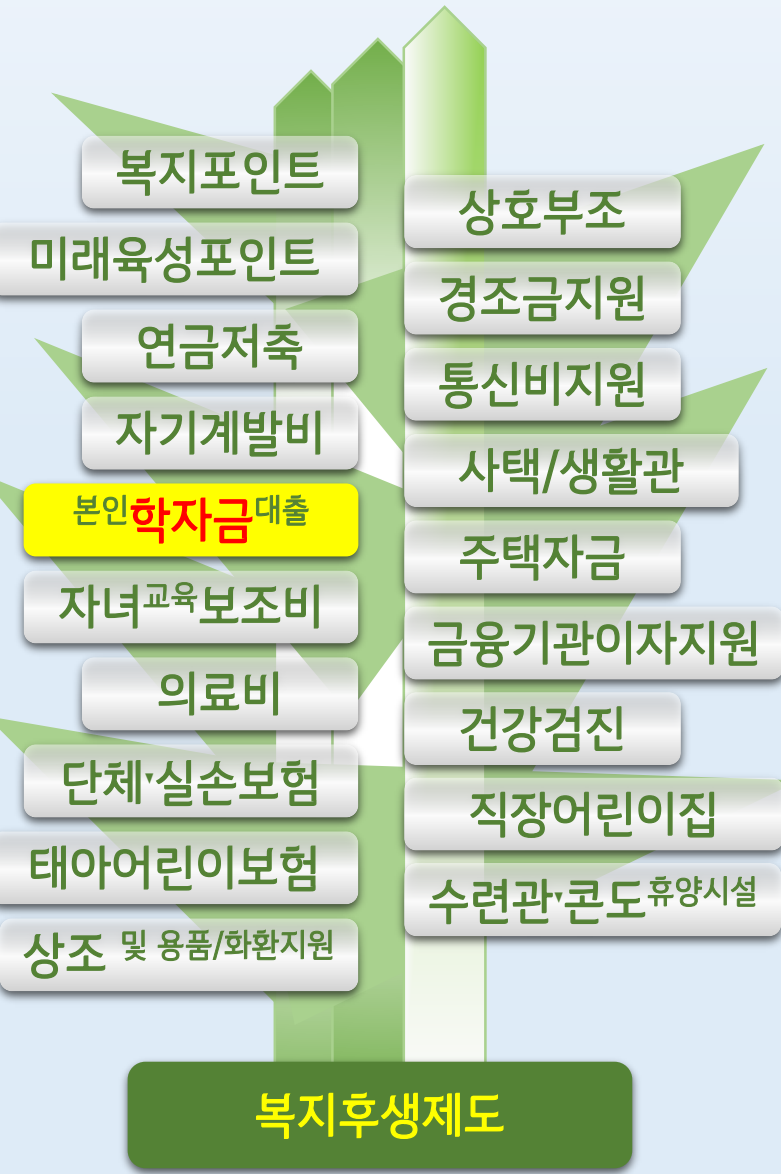
100만원

월 1회 지원(당월 20일 기준)

본인 신용카드, 복지카드 **先결제**

매년 12월20일 까지 승인시 지급





구분	내용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 잔액이 있는 직원('20년 1.1일 이전 입사자 포함) - 입사 후 1회에 한해 신청가능
대부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부한도 없음(가계안정자금 대부한도에 미포함) - 본인명의 대학교/대학원 학자금 대출금 잔액(생활비 대출금 제외)
채권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증보험
상환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5년/7년/10년 중 택일, 원금균등 분할상환
이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무이자 (연체이자율 20%)

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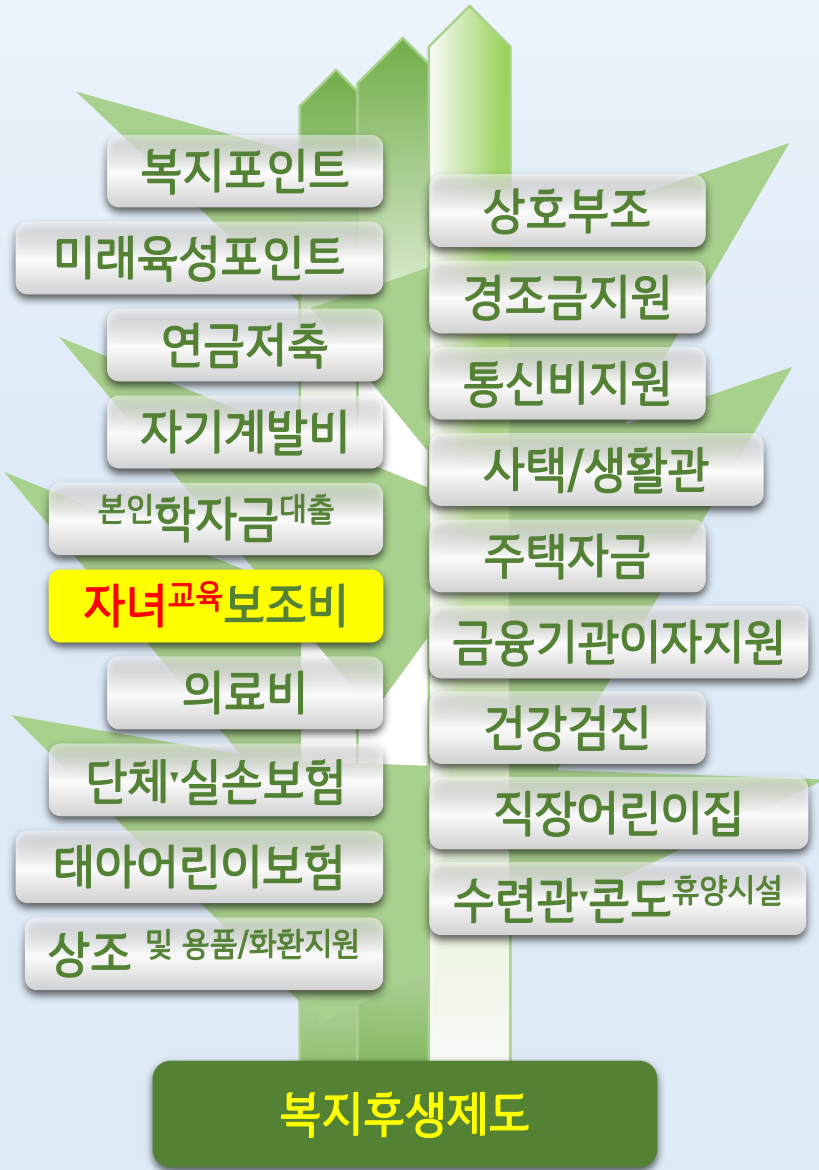
만 5~15세의 자녀(ERP등록기준)

자녀 1인당 연 60만원(자녀수 제한없음)

지금일 기준 재직자 **限**

중도입사자 일할계산

매년 12월20일까지 신청가능



◆ 지원내용

배우자와 만 26세이하 자녀(건강보험증등록기준)

가족합산 최대 1천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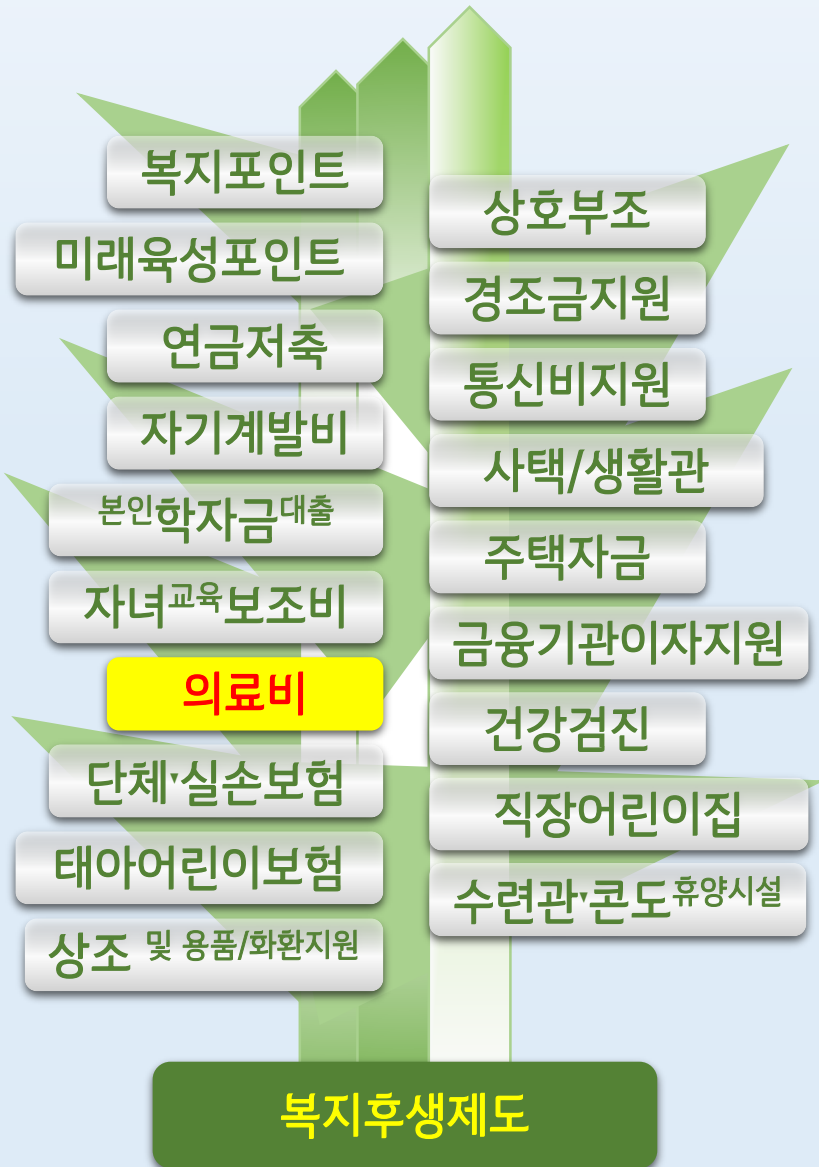
진료일자 기준 1년 이내 신청 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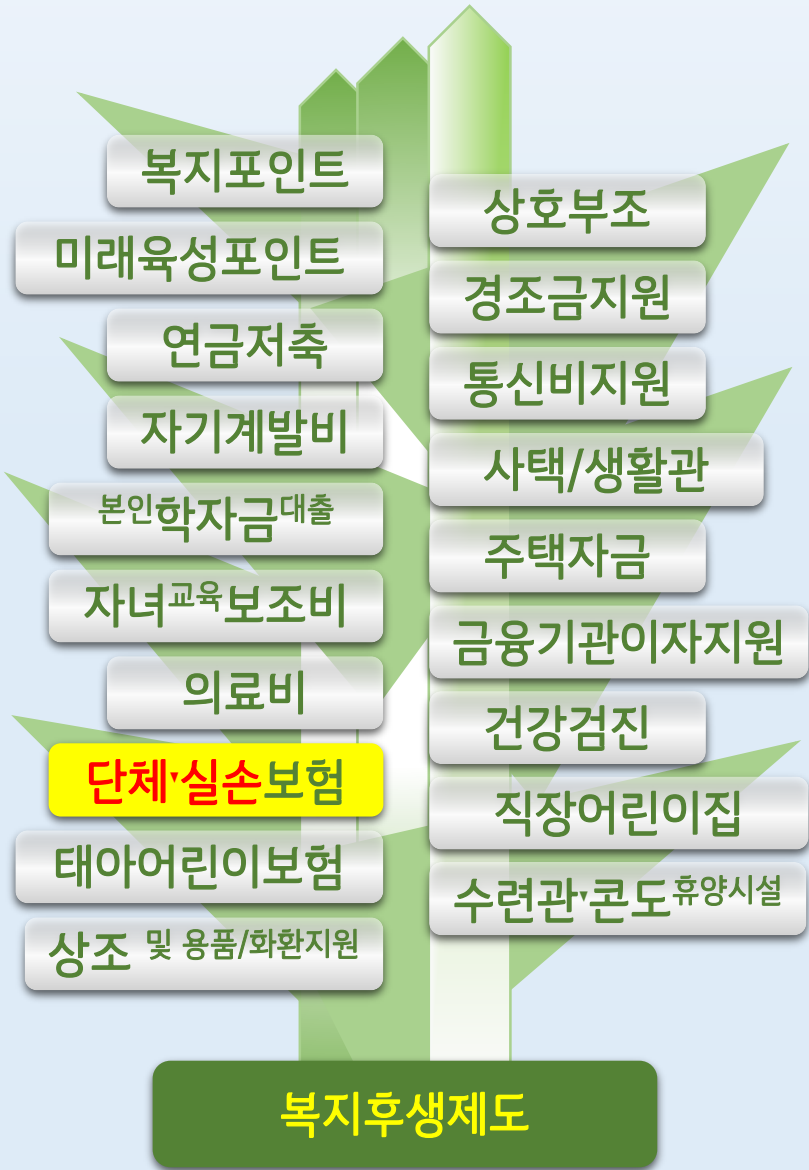
분기별 가족합산 최소공제금액 6만원이상

비급여항목 MRI/CT/초음파 월1회 기존제도 유지(최소공제금액없음)

- 직원 입원의료비 비급여 MRI(30%회사+70%단체보험)

- 가족의 비급여 MRI 100% 회사의료비 지원





▶ 단체보험

재해사망: 1억원(본인, 배우자)
 일반사망: 1억원(기금 배우자 2백만원)
 암진단: 1,500만원(본인,배우자)
 교통사망: 5,000만원(본인)

▶ 실손보험

입원의료/입원일당 중 택일
 입원의료: 상해/질병당, 입원일당: 4만원/일
가족은 입원의료만 신청가능
 기본형(입원진료)+특약형(비급여MRI/주사제)

구분	입/통원		자기부담비율		공제금액	보장한도	
	입원	통원	급여	비급여		회수	금액
기본형	○		10%	20%	· 급여성 10%, 비급여성 20%	-	1,000만원
비급여 특약형	○	○	-	30%	· 2만원 또는 1회 비용의 30% 중 높은 금액	-	300만원
						50회	250만원

▼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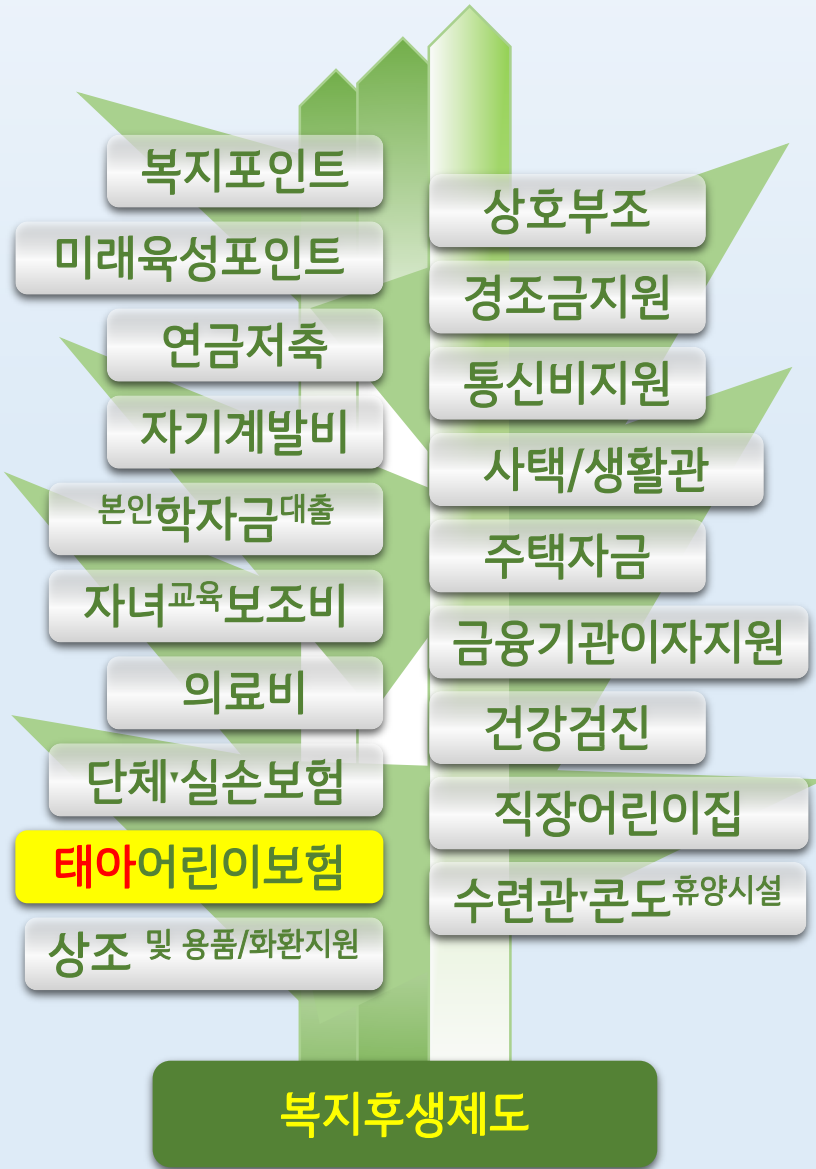
만 4세 이하의 자녀(ERP등록기준 일괄등록 추가자녀 월단의 자동가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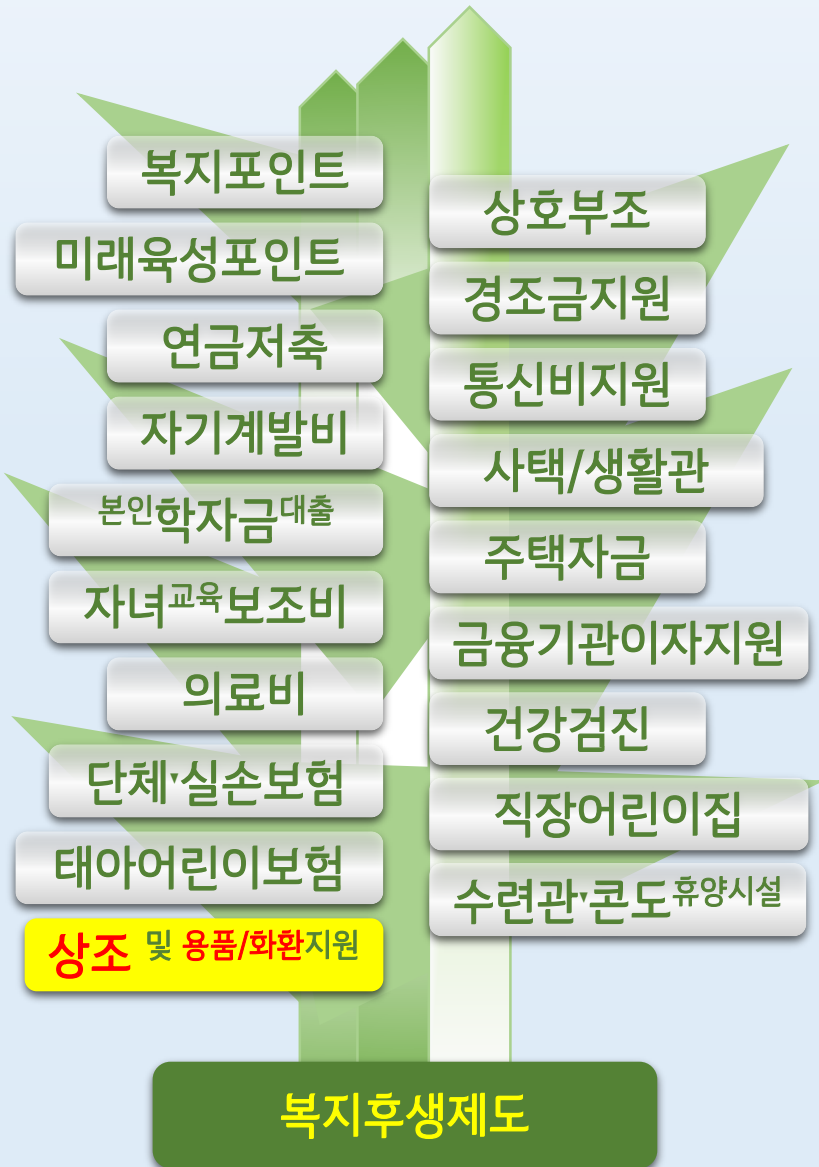
태아 어린이 보험가입 무상지원

상해/질병입원일당, 수술위로금,저체중아 인큐베이트 이용일당 등

자녀 수 제한 없음

임신 시 가입가능(女직원 ERP등록, 男직원^{의부인} 등록 4월중)





▶ 상조지원

재직중인 임직원(재직기간에 한하여 가입시점부터10년간)

본인부담 15,000원, 회사지원 15,000원(10년)

입사 12개월 이내 신청자 **限**

시행일: 2021.5.1 (**다운플랜 1577-1555**)

▶ 용품/화환지원

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 중 희망자 **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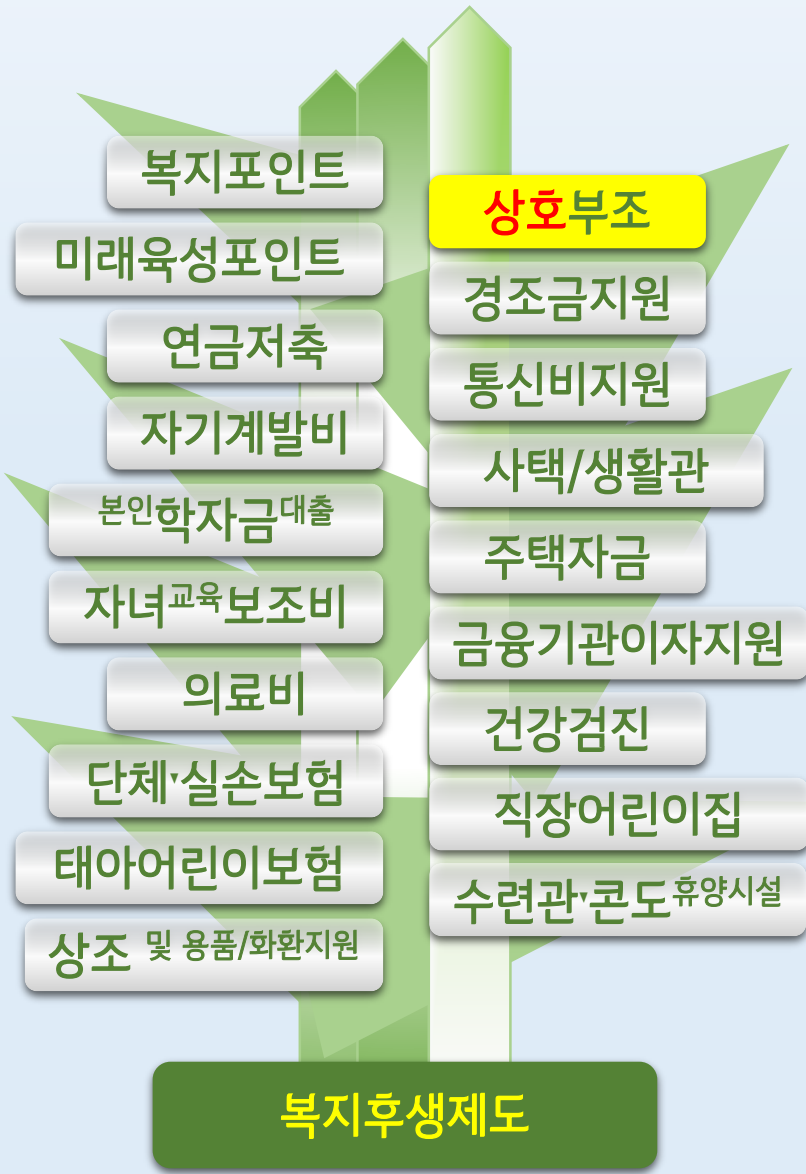
장제용품: 1.직원 및 배우자 사망 2.임직원 직계존비속 사망

3. 배우자 부모 사망 4. 임직원 외조부모 사망

재직 직원 용품 400인분+근조기 / **퇴직직원** 용품300인분

근조화환: 1.본인 2.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3.자녀사망

축하화환: 1.본인결혼 2.자녀결혼



지원내용

임직원(사유발생 재직직원)

사망: 본인, 배우자, 자녀 및 본인/배우자의 부모(모든사망형태)

결혼: 본인(재혼 포함) 및 자녀

사망/결혼의 당사자 기준 중복지원 불가(형제, 자매 예외)

지급사유당 5백만원(총 2회까지 지급)

퇴직 전까지 미 수혜 시, 본인납입금의 1.1배 지급

사유발생일로부터 3년

결혼경조금

직원 및 직원자녀 결혼 시 50만원(상호부조와 중복지급가능)

출산축하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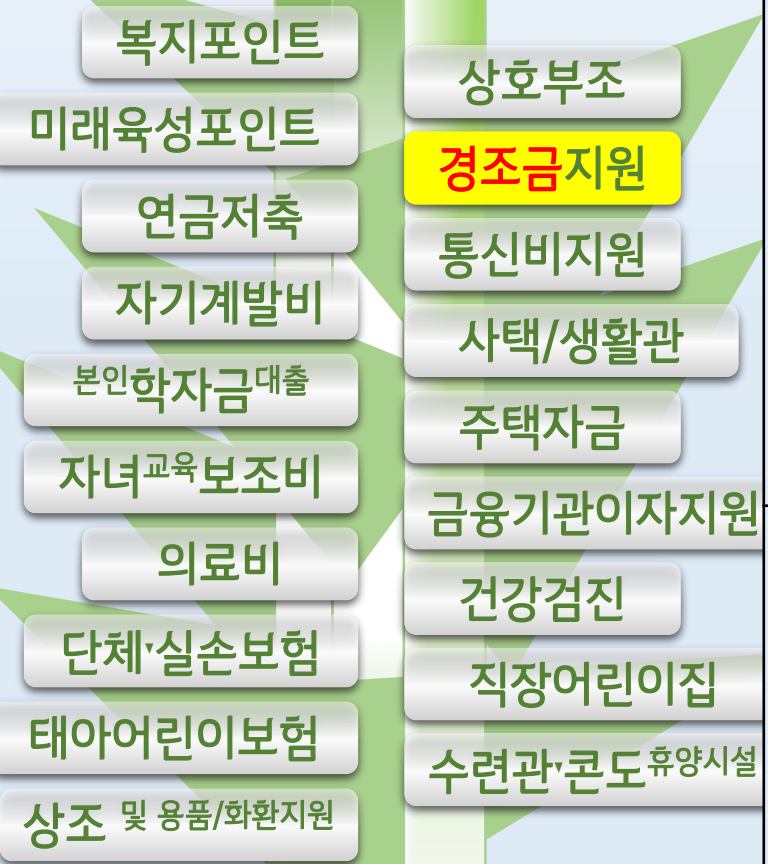
첫째 2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이상 300만원

체육행사비

1인당 연간10만원(춘·추계 각5만원)

건전모임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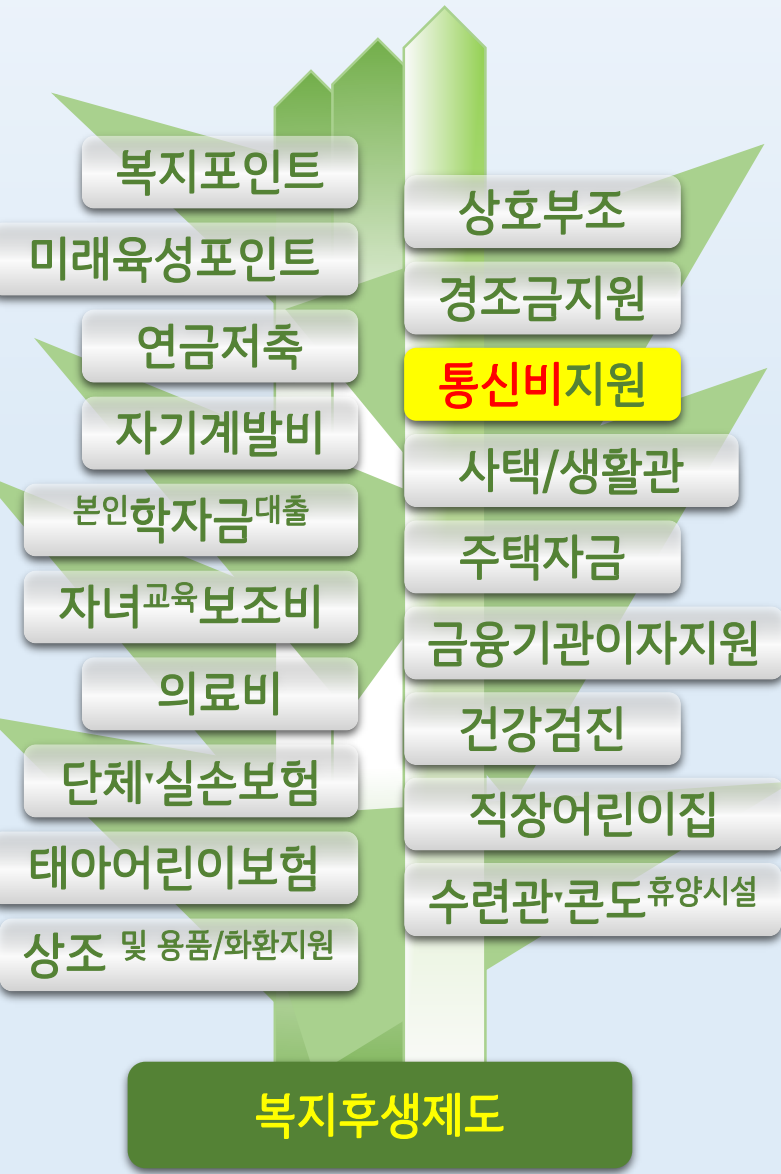
1인당 연간5만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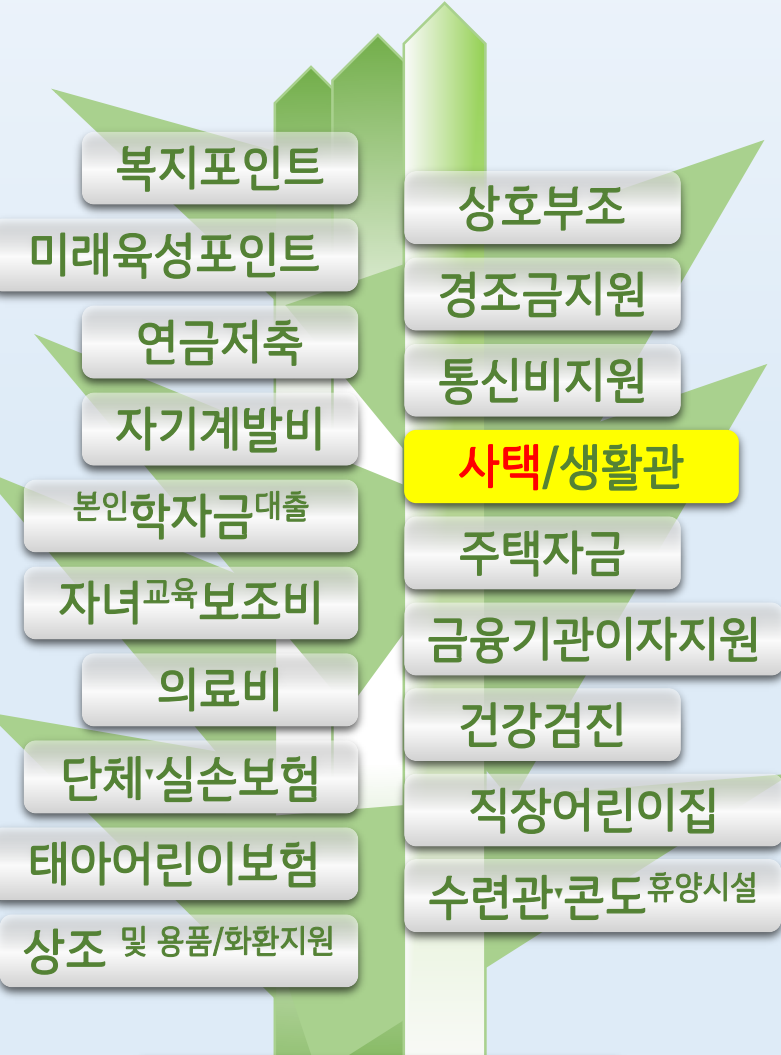
복지후생제도

		구분		지급액	비고
경조금	축의금	결혼	본인/자녀	50만원	회갑(만60세), 칠순(만69세), 팔순(만79세)
		회갑, 칠순, 팔순(택일)	직계존속(외가제외), 배우자 부모	30만원	
	출산	직원/배우자	첫째, 둘째 200만원, 셋째 이상 300만원	주민번호기준	
	조위금	사망	본인	1억원	재해사망은 단체보험 적용 일반/재해사망은 단체보험 적용(1억)
배우자			200만원		
직계존비속(외가제외) 배우자부모			50만원		
재난구호금	주택파손(자가)	완전파손	1,000만원	○ 직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 ○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주택	
		1/2 이상 파손	700만원		
		1/3 이상 파손	350만원		
	주택파손(전세)	완전파손	200만원		
		1/2 이상 파손	150만원		
		1/3 이상 파손	100만원		
주택침수피해	완전 침수	300만원	주민등록상 거주주택		
	1/2 이상 침수	200만원			
	1/3 이상 침수 <small>2020년 신설</small>	100만원			

※ 본인사망을 제외한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보험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, 상호부조보험 수혜 한도(2회)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경조금에서 지급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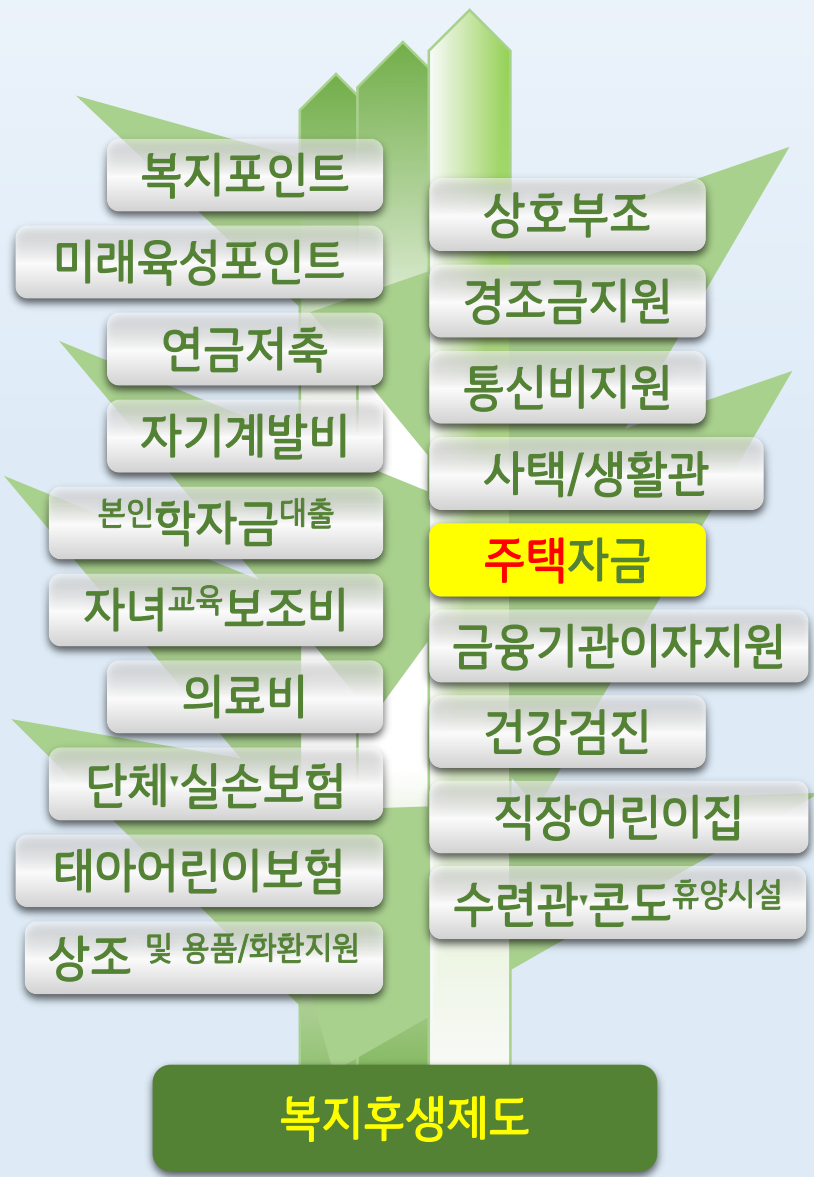


구분	집전화/인터넷전화	OTV/OTS
지원금액	월 1만원 : 집전화, 인터넷전화중 택일 -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 명의 전화	월 1만원 -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 명의
지원범위	- 시내, 시외, LM, 국제 등 통화료 - 부가서비스료(이용료) ※ 기본료 및 정보이용료 제외	- 기본료와 콘텐츠이용료 ☞ 기본료 차감 후 콘텐츠이용료 차감 ☞ 콘텐츠이용료 : 유료 VOD이용료 (유료채널, VOD월정액, 유료앱 이용료는 제외)
신청방법	ERP > 복지후생 > 통신비지원 메뉴에서 신청	ERP > 복지후생 > 올레TV지원 메뉴에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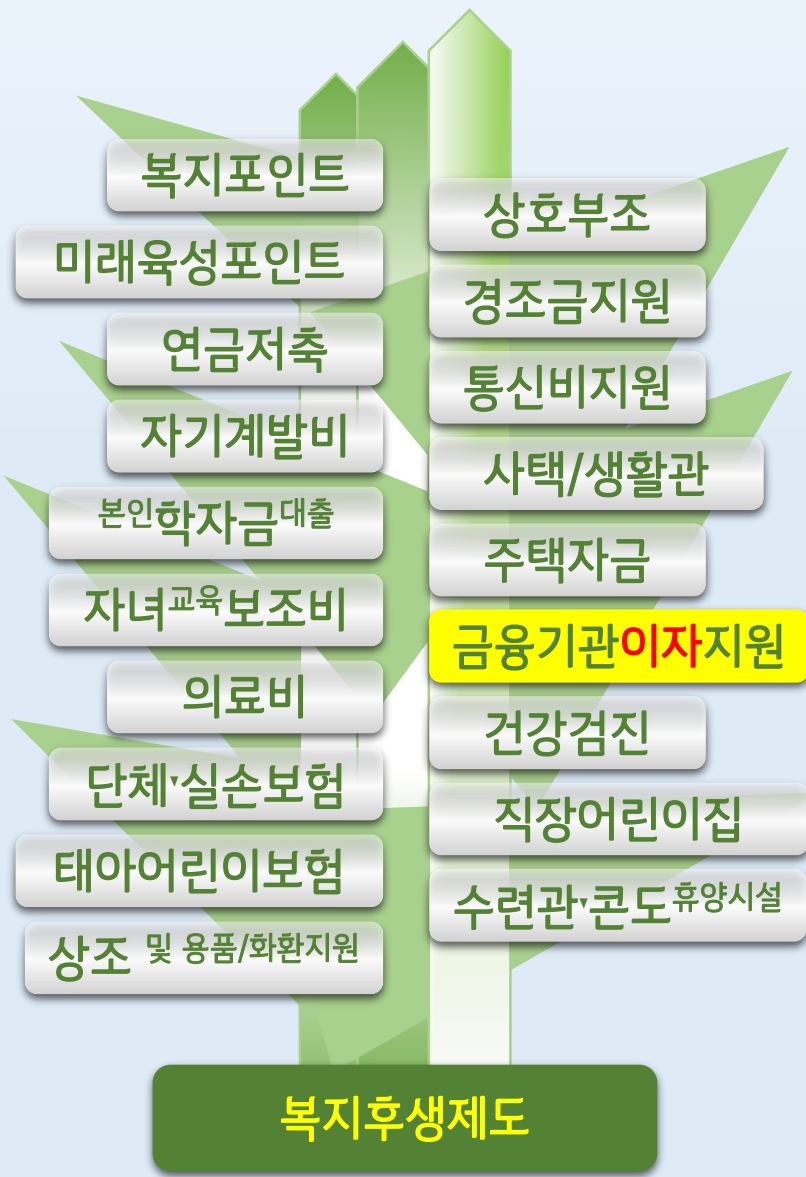


복지후생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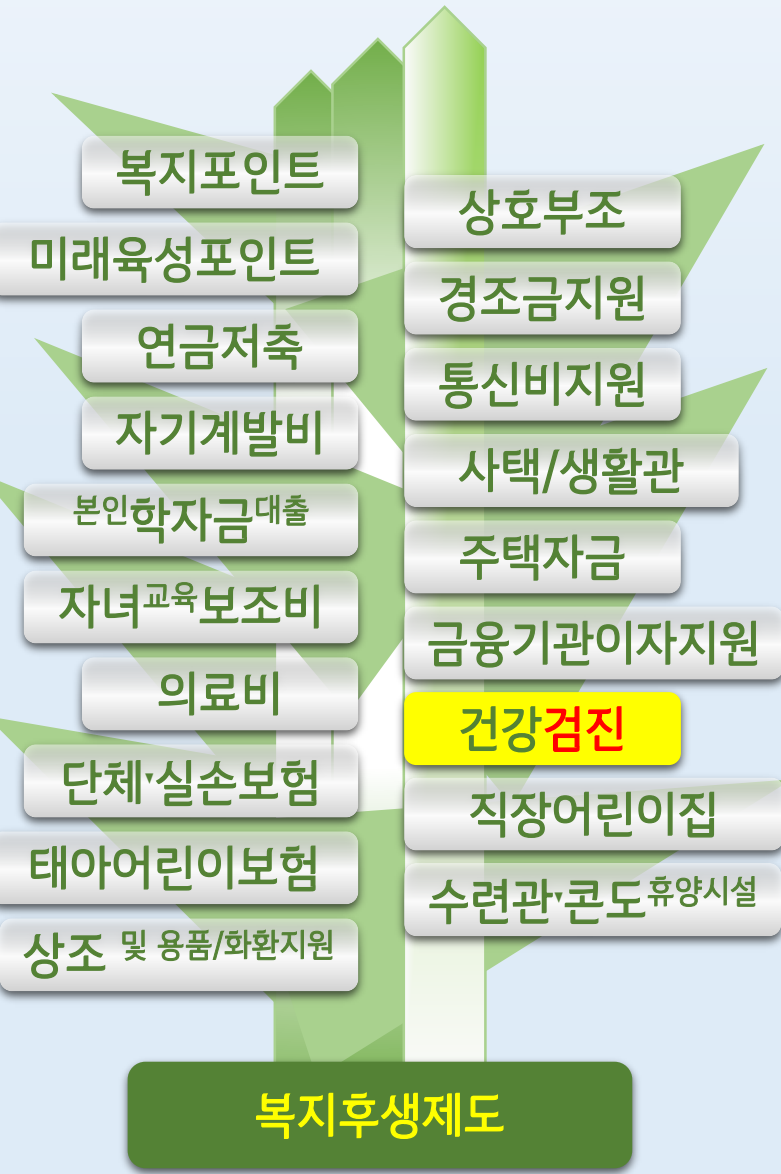
구분	주요 내용		
입주자격	통근거리(편도) 50km이상이면서 통근시간(편도) 1시간이상 - 거리 :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시-근무기관 거리 기준/네이버 최단거리 - 시간 :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 운행 소요시간 기준 ※ 서울권 근무자는 생활관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, 수도권 근무자는 통근거리,시간,교통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배정		
종류 및 입주대상	사택의 종류 - 보유사택 : 아파트/연립/단독주택 등 - 임차사택 : 회사에서 임차한 사택(아파트,연립/단독주택,원룸 등)		
	종류	입주대상	입주기간
	기관장사택	임원(상무(보)급 본부 예하 기관장	해당기관 재직기간 이내
	가족사택	무주택자로 동거가족이 있는 직원	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
	합숙소	임원급을 제외한 보기/비보직 직원	해당기관 재직기간 이내
	생활관	수도권 단신부임 근무자<오류동>	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방법	기관 사택담당자에게 신청 ERP > HR > 개인업무 > 신청 > 사택		
입주승인	사택관리책임자는(또는 사택관리담당자)가 대기자 순서에 따라 승인 ※ 입주 우선순위(대기자 경합 시) ① 직급이 낮은자 ② 장기근속자 ③ 부양가족이 많은자 (본인,배우자,본인의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		
입주자 부담	각종 세금 및 비품 일체 ※ 사택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택 또는 비품을 훼손, 파괴,망실 하였을 경우 변상 또는 원상복구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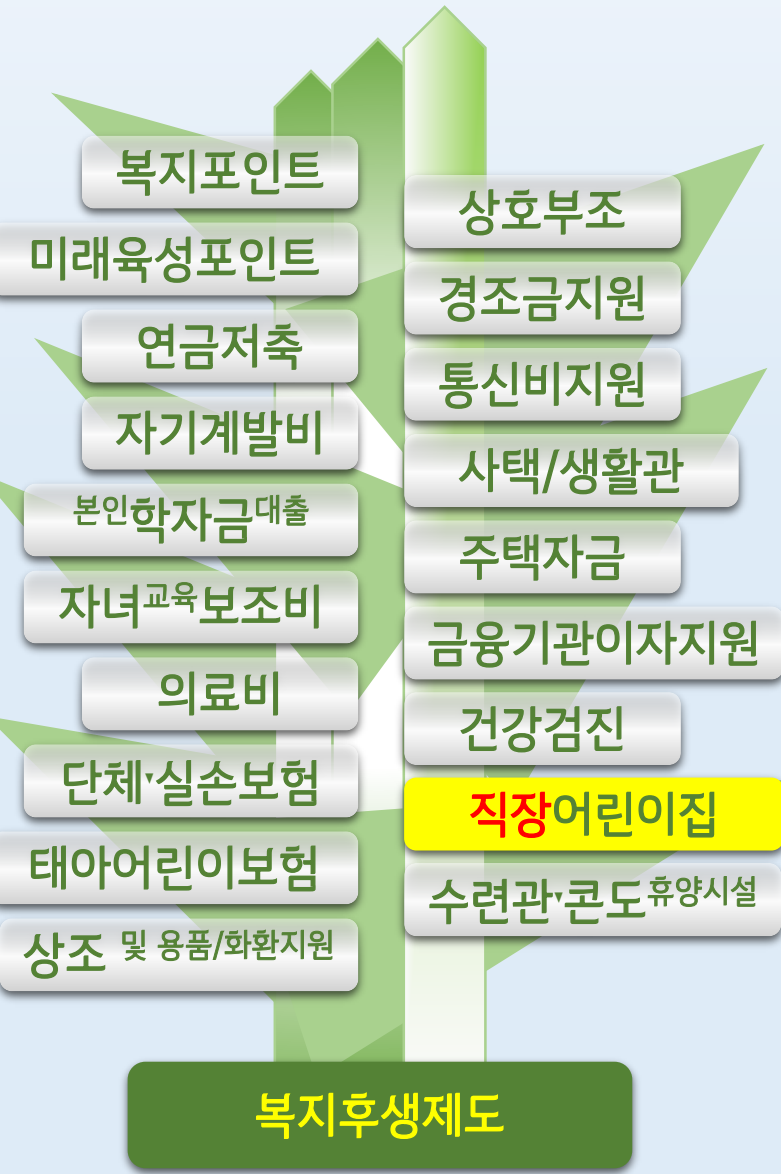
구분	대상자
일반대부	40세미만 / 40세이상 이원화 운영
우선대부 (연령무관)	<p>① 결혼 목적 주택 구입·임차(3개월 전·후) - 직원 본인이 결혼 후 실 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·임차</p> <p>②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)제출 (분양계약의 경우 대부월로부터 1년내 등기부등본제출)</p>
신청 선정 지급	<p>> 매월 1~15일(마감일까지 ERP신청 및 서류 도착분에 한해 접수)</p> <p>> 매월 20일경(개별안내 -> 채권확보서류 제출 진행)</p> <p>> 매월 말일(휴일은 전일), 별도계좌로 지급</p>
대부금액	<p>> 마련, 임차 구분 없이 1억원이며 생애최초주택구입시 1억원 추가 총 2억원 대부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대부액 기준 주택대부 한도금액 1억을 모두 대부 받고 전액 상환한 때에는 직전 주택대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해 대부기회(대부 한도 1억원)를 재부여
신청사유	<p>> 주택 마련, 임차(임차증액 포함. (단, 임차증액은 증액금액내에서만 신청가능))</p> <p>> 우선 선정 사유 : 직원 결혼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</p>
채권확보 방법	<p>> 연대보증 또는 보증보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대보증 설정가능한도는 주택자금, 가계안정자금, 긴급생활자금, 자녀학자금 대부 합산한 금액으로 상환금액 무관하며 누적 3천만원까지 연대보증설정가능
상환기간	> 신청 시 선택(단, 중도변경 불가) : 최대 12년
이자율	연 1%(연체이자율 20%)



구분	내용
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4회(분기 1회 시행) 세부일정 별도 문서 공지 본인 결혼사유에 한해 다른 대부 또는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과 동시 신청가능
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관별 인원에 비례하여 대부금액 일괄 배정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기관별 대부자 선정위원회 자체심의·선정 연령별 이원화(만 40세미만, 만 40세이상)하여 선정 직원 본인결혼 사유 신청자 우선 선정
대부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1억원(1천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)
지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5년(중도해지의 경우 지원중단), (“유동성 한도대출”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)
지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연 1.5%까지 지원
지급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월 말일, 별도계좌 입금



구분	내용			
검진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 직원[포함: 청경/계약직, 제외: 파견계약직/재적전출] 배우자(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직원의 부모 중 1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 : kt 의료비 대상자 등재된 배우자에 限 - 부모 : kt 가족사항 등재된 직원에 限 √ 배우자 검진대상 확인 : ERP>복지후생>신청>의료비(대상등록) 완료자에 限 √ 부모 검진대상 확인 : ERP>인사정보>가족사항(대상등록) 완료자에 限 √ 직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로서 ERP 의료비(대상등록)이 안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1단계 : 1577-1000(건강보험공단)에 피부양자자격확인서 FAX요청 ☞ 2단계 : ERP>복지후생>신청>의료비(대상등록)메뉴에서 대상등록 ☞ 3단계 : 신청 익일 본사업무지원센터 승인 (평일 기준 신청 익일 승인완료, 031-727-4232) ☞ 4단계 : 추가된 배우자를 본사담당이 검진대상자로 추가 등록(4월~7월까지 매월 1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매월 25일 기준 승인완료 된 배우자를 당일 말일까지 등록 ☞ 5단계 : 추가된 배우자는 의료비 대상등록 신청익월(5월~8월) 1~7일 사이에 ERP 검진 신청 가능 			
지원기준	구분		직원(배우자)	배우자,자녀가 없는 직원 부모1명
	만50세 이상	1972.12.31 이전	30만원	30만원
	만35세~만50세미만	1973.1.1~1987.12.31	20만원	20만원
	만35세 미만	1988.1.1 이후	15만원	



구분	주요내용
지원대상	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(사유발생 시)
운영시설	총 8개소(본사꿈나무, 분당, 목동, 일산, 혜화, 부산, 광주, 우면동) => 5개소(원아 無)
신청방법	이메일, 팩스 등 어린이집 별로 상이(전사공지사항 참고)
모집시기	매년 10월~12월(추가모집 수시)
부담비용	정부지원금 + 회사지원금(운용비 조건)을 제외한 실비
문의	본사(kt 수내빌딩 1층) : 031-713-0000 분당(kt 이메빌딩 2층) : 031-707-3255 목동(kt 목동전산타워 1층) : 02-3219-1840 혜화(kt 혜화빌딩 1층) : 02-3676-9300 우면동(kt 연구개발센터 1층) : 02-574-0030

어린이집	1세	2세	3세	4세	5세	계
본사(꿈나무)	12	16	12	12	5	57
분당	6	3	4	0	3	16
목동	5	7	7	6	0	25
우면동	8	13	9	4	3	37
혜화	3	3	4	0	0	10
계	34	42	36	22	11	145

- 복지포인트
- 미래육성포인트
- 연금저축
- 자기계발비
- 본인학자금대출
- 자녀교육보조비
- 의료비
- 단체·실손보험
- 태아어린이보험
- 상조 및 용품/화환지원
- 상호부조
- 경조금지원
- 통신비지원
- 사택/생활관
- 주택자금
- 금융기관이자지원
- 건강검진
- 직장어린이집

수련관·콘도 휴양시설

복지후생제도

『 2022년 휴양시설 운영 』 안내

국내 최고 휴양시설을 누구나, 무료로, 최소 1회 이상!

“1인, 1휴양시설 이용 캠페인”을 시행합니다.

전국 구석구석, 봄·여름·가을·겨울 휴양시설 이용 가능

☀ 춘계기간 운영안내

구분	수련관	AI호텔 & 리조트	콘도
대상시설	경주·대관령	30개소 (AI호텔 8개소, 리조트22개소)	금호·대명·오크밸리·한화
입소기준	4명 이내	시설별, 지자체별 자체 운영기준에 따름	
이용기간	3.1(화) ~ 5.31(화)		신청일 기준 15일 이후, 90일 이내
신청기간	1.27(목) ~ 2.10(목)		1.24(월) ~
승인일	2.11(금)		매주 월/목
잔여객실오픈	2.15(화) ~		-

『 2022년 휴양시설 운영 』 안내

국내 최고 휴양시설을 누구나, 무료로, 최소 1회 이상!

“1인, 1휴양시설 이용 캠페인”을 시행합니다.

전국 구석구석, 봄·여름·가을·겨울 휴양시설 이용 가능

☀ 신청방법

- KATE > ERP > 복리후생 > 신청 > 휴양시설 | 모바일 KATE > 마비서 > 휴양시설
- 선정기준 : 생활입소 > 저이용자순
- 미이용자 선정 우대, 동일 순위의 경우 저직급 > 저연령

☀ 문의

- ✓ 수련관 & 콘도 : 1533-0254 (KHS)
- ✓ AI호텔 & 리조트 : 1577-1864 (kt commerce)

기타 상세 내용은
별도 첨부자료 확인



- 복지포인트
- 미래육성포인트
- 연금저축
- 자기계발비
- 본인학자금대출
- 자녀교육보조비
- 의료비
- 단체·실손보험
- 태아어린이보험
- 상조 및 용품/화환지원
- 상호부조
- 경조금지원
- 통신비지원
- 사택/생활관
- 주택자금
- 금융기관이자지원
- 건강검진
- 직장어린이집
- 수련관·콘도 휴양시설

복지후생제도

KT AI호텔&리조트 지역별 배치도

6개 권역 · 30개 시설 분포

- 복지포인트
 - 미래육성포인트
 - 연금저축
 - 자기계발비
 - 본인학자금대출
 - 자녀교육보조비
 - 의료비
 - 단체·실손보험
 - 태아어린이보험
 - 상조 및 용품/화환지원
- 상호부조
 - 경조금지원
 - 통신비지원
 - 사택/생활관
 - 주택자금
 - 금융기관이자지원
 - 건강검진
 - 직장어린이집

수련관·콘도 휴양시설

복지후생제도

- 서울 (5개 시설)**
-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(AI)
 - 안다즈 서울 강남 (AI)
 - 노보텔 동대문 (AI)
 - 레스케이프 호텔 (AI)
 - 메이필드 호텔 (AI)

- 충청권 (6개 시설)**
- 대전 한화리조트
 - 소노벨 천안
 - 아일랜드 리솜
 - 스플라스 리솜
 - 레스트리/포레스트 리솜
 - 소노문 단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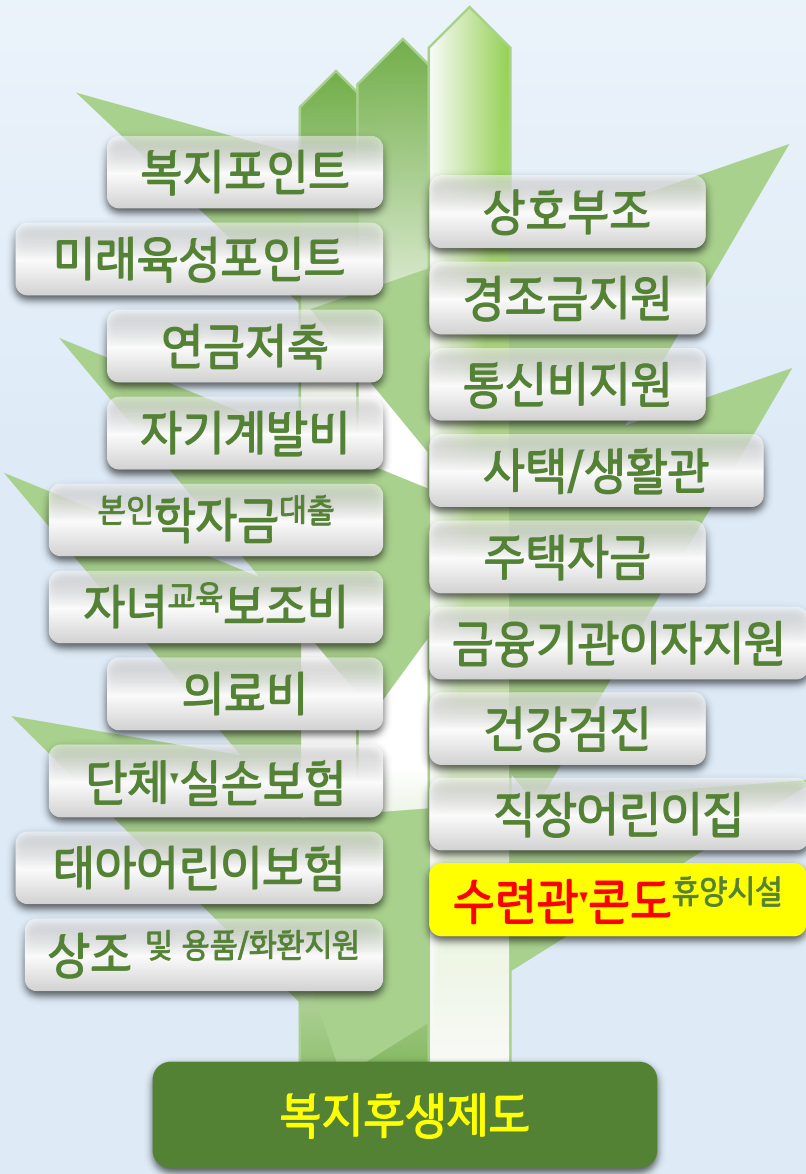
- 전라권 (5개 시설)**
- 여수 한화리조트 벨메르
 - 여수 베네치아 호텔
 - 화순 금호리조트
 - 라마다 전주 호텔
 - 소노벨 변산



- 강원권 (4개 시설)**
- 홍천 소노벨 비발디파크
 - 설악 금호리조트
 - 체스터튼스 속초
 - 강릉 탑스텐 호텔

- 경상권 (8개 시설)**
- 신라스테이 해운대
 - 해운대 더반 호텔 (AI)
 - 해운대 베이몬드 호텔 (AI)
 - 통영 금호리조트
 - 소노캠 거제
 - 거제 한화리조트 벨버디어
 - 대구 메리어트 호텔 (AI)
 - 소노캠 청송

- 제주권 (2개 시설)**
- 제주 한화리조트
 - 제주 금호리조트



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휴양시설 이용 안내문

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KT임직원이 **가족이 아닌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, 언론종사자, 국공립·사립학교 임직원 및 그 배우자** 등에게 휴양시설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동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**징역 또는 벌금, 과태료 등의 불이익**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휴양시설 : 수련관 및 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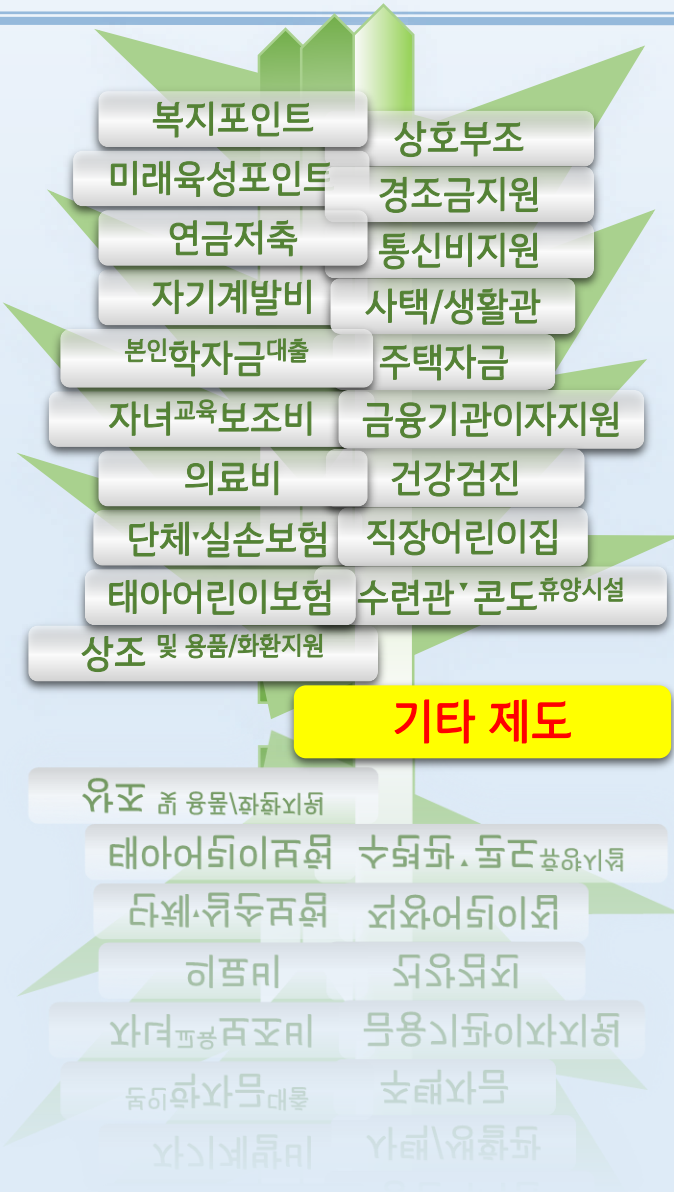
■ 적용시기 : 2016.9.28(수) 부터

■ 유형별 가능 여부

- 휴양시설 이용권을 ‘공직자 등’에 제공 ⇒ “불가”
- 가족인 ‘공직자 등’을 동반한 경우 ⇒ “가능”
- 가족이 아닌 ‘공직자 등’을 동반한 경우 ⇒ “불가”

■ 가족의 범위(민법 제779조)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 - 단, 제2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



PayBand 개선

G1사원급, G2대리급의 PayBand 하한을 당해년도 임금협약의 2배 적용
 적용: '21년~'23년 3년간 한시적 적용

어학 시험비

연 20만원 한도 어학시험비 실비 지원(토익, HSK등 응시료)
성적표 제출 必

자녀교육 프로그램

초 KT홈스쿨/중 수박씨/엠베스트/고 대성마이맥/메가스터디
 지원금액: 최소 10만원 ~ 최대 전액
 자녀 수 제한 없음 자녀1인당 1개 프로그램 신청 限

글로벌 문화체험

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
 자기계발출장에 따른 해외 항공료, 숙박비, 등 실비 지원
 근속 5년 도래일로부터 2년 이내 인턴기간 제외 실 근속년수 기준

부서장 재량 포상휴가

팀장, 부장, 담당, 지점장, 지사장, 센터장 재량으로 연간 7일이내 부여

안식년휴가 (자기계발출장비)

5년(5일+100만원)/10년(5일+100만원), 20년(8일+150만원)/30년(8일+150만원)
 근속 보로금 및 자기계발출장 신청 시 부여(2년 분할사용 가능)

임신기단축 근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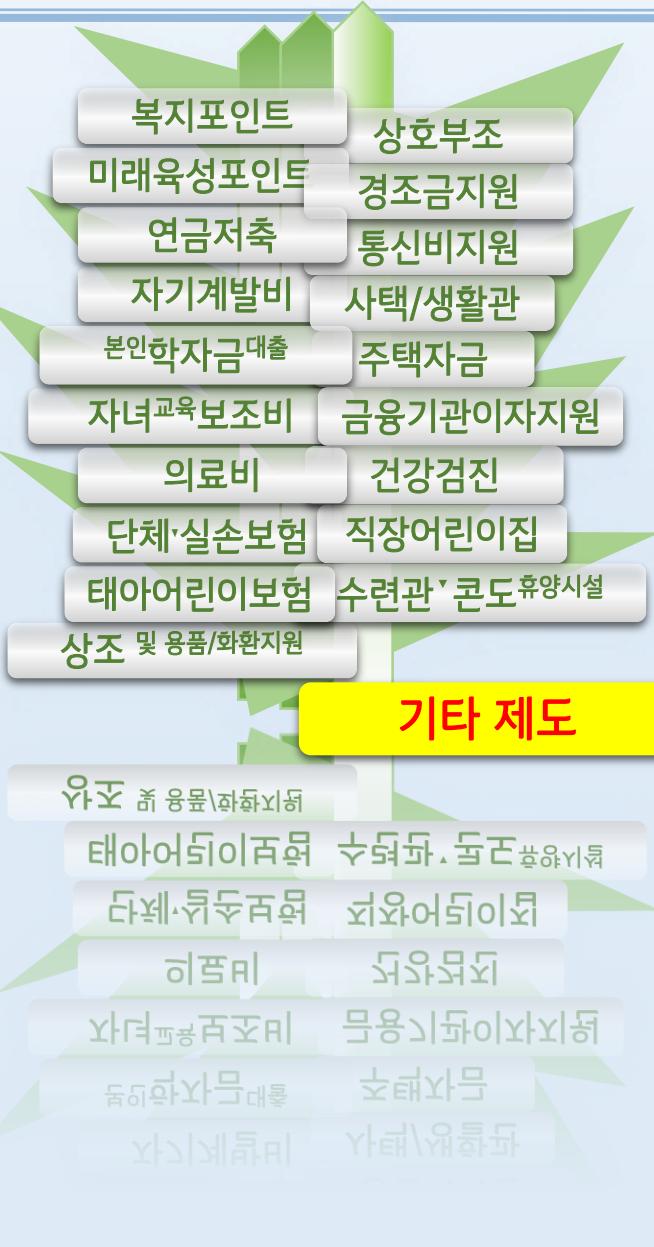
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여직원
 직책자 별도 신청 없이 일 3시간 단축근무

복지포인트 상호부조
 미래육성포인트 경조금지원
 연금저축 통신비지원
 자기계발비 사택/생활관
 본인학자금대출 주택자금
 자녀교육보조비 금융기관이자지원
 의료비 건강검진
 단체·실손보험 직장어린이집
 태아어린이보험 수련관·콘도 휴양시설
 상조 및 용품/화환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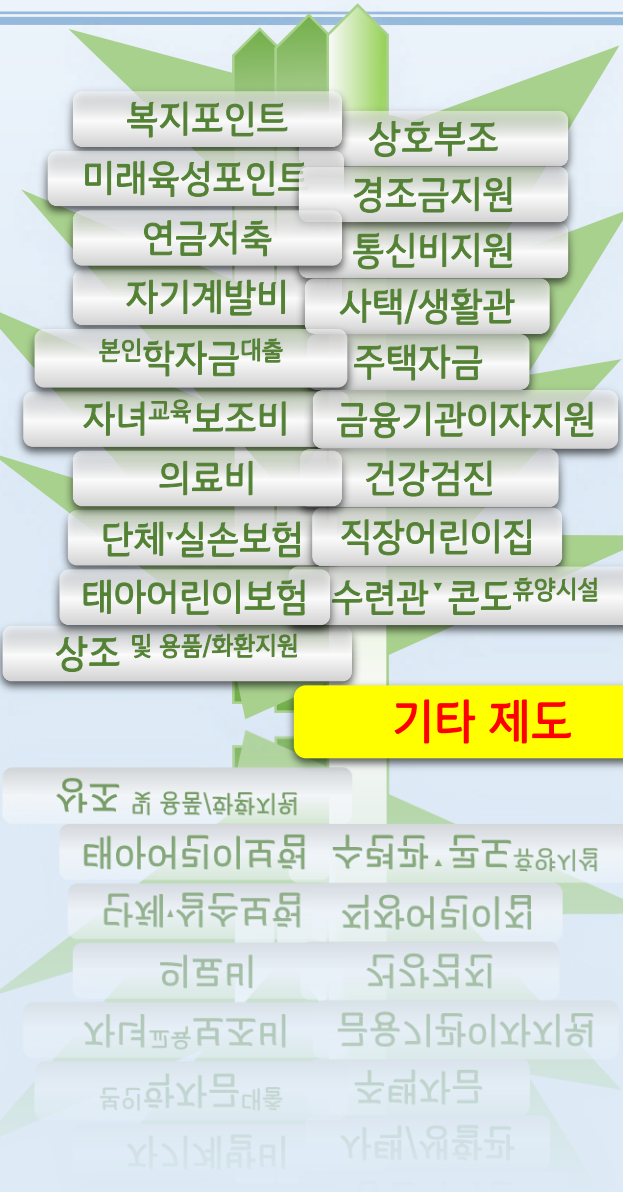
기타 제도

유조 휴 용품/화환지원
 태아어린이보험 수련관·콘도 휴양시설
 단체·실손보험 직장어린이집
 이혼비 자활지원
 자녀교육보조비 금융기관이자지원
 돌봄직무지원금 호혜자금
 자기계발비 자택생활비

유형	내용								
연차 유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근로에 대한 휴식 보상(근로기준법 제60조), 근속년수에 따라 부여, 매 2년에 1개씩 가산(25일 한도)부여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근속년수</th> <th>부여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근속 1년 미만</td> <td>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</td> </tr> <tr> <td>근속 1년 경과 년도</td> <td>15일</td> </tr> <tr> <td>근속 2년 이상</td> <td>15일+(근속년수-1일)÷2 ※ 소수점 이하 절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차휴가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용한도 최대 14회 (연차 7일 분할) ※ 초등6학년 이하 또는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최대 20회(연차 10일 분할) 사용형태 : 08:00~12:00(오전) 또는 14:00~18:00(오후), - 통근보조비 지급, 급식보조비 미지급 	근속년수	부여기준	근속 1년 미만	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	근속 1년 경과 년도	15일	근속 2년 이상	15일+(근속년수-1일)÷2 ※ 소수점 이하 절사
근속년수	부여기준								
근속 1년 미만	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								
근속 1년 경과 년도	15일								
근속 2년 이상	15일+(근속년수-1일)÷2 ※ 소수점 이하 절사								
출산 전·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휴가 부여(근로기준법 제7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명 출산 : 90일(70일 유급, 20일 무급), 산후 연속 45일 이상 사용 - 다태아 출산 : 120일(90일 유급, 30일 무급), 산후 연속 60일 이상 사용 								
배우자 출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성보호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2) 10일(유급),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								
태아검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휴가 부여(근로기준법 제74조의 2)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부여(유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신 28주까지 : 4주마다 1일, -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: 2주마다 1일, - 임신 37주 이후 : 1주마다 1일 								



유형	내 용	
병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외적인 부상,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(복무관리지침 제35조) • 동일 질병에 대해 누계 70일(유급)까지 병가 부여 * 입원병가와 일반병가를 통합하여 휴일,휴무일일 제외하고 70일 한도 사용 * 동일질병으로 연도별 중복신청은 불가 	
	구분	부 여 기 준
	입원병가	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(실제 입원일수와 연속된 통원치료기간 포함) * 진단서 + 입원확인서 + 통원치료확인서(주1회 이상)제출 필요
	일반병가	입원병가를 제외한 병가 ※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 차감 (8일 이상일 경우 병원급 진단서 제출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직권휴직 : 입원병가 70일 소진 후 연차까지 모두 소진하면 직권휴직(1년) ▷ 직권면직 : 직권휴직 만 1년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로제공 불가 시 직권면직 ▷ 의원휴직 : 본인 의사로 휴직 	
	※ 병가에 대한 보수	
구분	부 여 기 준	
초과근무수당	휴가(병가 포함)일수가 10일 초과하면 일수만큼 지급 제외	
급식통근보조비	병가 일수만큼 지급 제외(1일당 13,000원)	
병가시 보수	기준연봉월정액, 성과급 정상지급	
직권휴직시 보수	기본급 지급	
의원휴직시 보수	미지급 ※ 동일 질병으로 연도별 중복신청은 불가	



기타 제도

유형	내용
난임치료 휴가	인공수정,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(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) , • 연 3일(최초 1일 유급, 2일 무급)
공상휴가	•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기간만큼 유급휴가부여 (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)
공가	• 동원 또는 동원훈련 참가 등 공적 업무에 참가 시 부여, •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부여
생리휴가	• 여성 보호(근로기준법 제73조) -> 월 1일(무급)
청원휴가	• 본인 및 가족 애경사를 위한 노사간 약정 휴가, • 사유별 1~7일(유급,휴일포함/미포함) ※ 자세한 사항은 청원휴가대상 일수표를 참고
병가	• 업무외적인 부상,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(복무관리지침 제35조) • 동일 질병에 대해 누계 70일(유급)까지 병가 부여
포상휴가	•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현저한 공적이 있을 경우 또는 직원사기 진작 필요 시 부여 -> 직원1인당 연간7일 이내 부여(유급)
특별휴가	• 정년퇴직 3월전부터 퇴직 시까지 휴가 부여 가능[3개월 이내 부여(유급)] 사용활성화 노력을 위한 노사협의 후 시행 [17/2분기 노사협의회]
건강검진	• 건강검진 당일 복무편의 제공(실제 건강검진일 외 사용불가) -> 연 1일(유급) * 도서지역은 연 2일 부여

각종 청원휴가 (복무제도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7
	자녀(결혼일 전후 각1일) ^{2019년 단협}	3(2↑)
	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^{선박원격도서지역 2일}	1
회갑/칠순	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	1
사망	배우자	6
	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	6
	승중상	6
	자녀	5
	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	5
	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	3
	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	3
	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모, 고모부, 이모, 이모부, 외숙부모	3(1↑)
탈상	배우자 ^{선박원격도서지역 2일}	1
	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^{선박원격도서지역 2일}	1
	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^{선박원격도서지역 2일}	1

구분	대상	일수
출산	배우자(처) ^{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}	10(5↑)
	여직원 출산 전 후 ^{산후 연속 45일 이상(70일 초과무급)}	90(~69)
	여직원 출산 전 후 (다태아) ^{산후 연속 60일 이상(90일 초과무급)}	120(~89)
	임신 28주 이상 유.사산	90(~69)
	임신 22주 이상, 27주 이내 유.사산	60
	임신 16주 이상, 21주 이내 유.사산	45
	임신 12주 이상, 15주 이내 유.사산	10
기타	임신 11주 이내 유.사산	5
	태아 검진 휴가	월 1일
	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최초 ^{1일유급, 2일무급}	3(1일 유급)
기타	수재, 화재 등 중대재해 ^{본인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존속}	3
	건강검진 ^{2019년 단협}	1(도서지역2)

※ 청원휴가 중 본인배우자 부모/배우자/자녀 사망/ 본인결혼은 휴가일수 계산 시 휴일 미포함하여 산정

신청 방법 : ERP > HR > 개인업무 > 복무/출장 > 복무 > 휴가